

표준 관리	적용 범위	표준 책임팀	적용 일자	검토 주기
	공통	HSE팀	2024.07.18	1회/1년
목적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임직원의 환경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업무범위	전 임직원, 사내 상주 또는 출입하는 모든 협력업체 임직원 및 사내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의 환경안전보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성과관리	관리지표	산출기준	주기	비고
	법규위반건수 (효과성)	법규위반건수	월1회	
제·개정 사유	ISO 45001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개정 업무통합화(환경관리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통합)			

1. 업무 FLOW CHART : 해당내용 없음

2. 용어의 정의

NO	용어	정의	비고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1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3. 책임과 권한

NO	선임인원	업무범위
1	HSE팀	전반적인 환경안전보건업무 담당하며, 각 직책별 인원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2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대표이사)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측정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여부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사항)</li> </ul>
4	<p>관리감독자 (생산팀장, 직장장~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li> <li>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li> <li>4)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대한 협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li> <li>5) 위험성평가에 업무사항 :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li> <li>6)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업무, 작업 시작 전 점검 등이 있다.</li> </ul>
5	<p>안전관리자 (HSE 팀 안전담당 및 산업안전기사 이상 보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i> <li>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li> <li>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li> <li>4)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li> <li>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건의</li> <li>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li> <li>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li> <li>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ul>
6	<p>보건관리자 (HSE 팀 보건담당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i> <li>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li> </ul>

	<p>산업위생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p>	<p>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4)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5)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li> <li>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li> <li>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li> <li>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li> <li>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li> <li>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7</p>	<p>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 팀별 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ol>

8	<p>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노동조합 산업안전 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li> <li>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li> <li>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에서의 신고</li> <li>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li> <li>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li> <li>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li> <li>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li> <li>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건의</li> <li>9) 안전보건 의식을 불돋우기 위한 활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li> </ol>
9	<p>산업보건의 (의사자격 보유인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li> <li>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10	<p>소방안전관리 (생산기술팀/ 공정기술팀 소방관리 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li> <li>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li> <li>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li> <li>4) 소방훈련 및 교육</li> <li>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li> <li>6) 화기 취급의 감독</li> </ol>
11	<p>위험물안전관리자 (생산팀 위험물 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물취급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li> <li>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li> <li>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li> <li>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li> <li>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li> </ul>
12	<p>가스안전관리자 (생산기술팀 /공정기술팀 가스관리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li> <li>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li> <li>3)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li> <li>4)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li> <li>5)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li> <li>6) 정압기, 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 관리</li> <li>7) 본관·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li> <li>8)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li> <li>9)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li> <li>10)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li> <li>11)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li> </ul>
13	<p>전기안전관리자 (생산기술팀/ 공정기술팀 전기관리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li> <li>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li> <li>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li> <li>4)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li> <li>5) 공사의 감리 업무</li> <li>6)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li> <li>7)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li> </ul>
14	<p>승강기안전관리자 (생산팀 물류담당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li> <li>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li> <li>3)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li> <li>4) 중대한 사고 및 고장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li> <li>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li> <li>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ul>
15	<p>환경기술인 (생산팀 환경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li> <li>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li> <li>3)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확인</li> </ul>
16	<p>영영사 (집단급식소 영양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li> <li>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li> <li>3)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li> <li>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li> <li>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li> <li>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li> <li>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li> </ul>

#### 4. 상세 업무 절차

##### 4.1 법규파악

- 1) HSE팀은 환경경영시스템파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파악, 환경안전보건관계법 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 2) 환경안전보건법 사항 중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 3) 세부적인 규정은 환경안전보건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규정(KCS-0H-0400)을 따른다.

##### 4.2 경영방침 및 문화조성

###### 1) 경영방침설정

- (1) HSE팀은 환경안전보건방침을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 (2) 작성된 환경안전보건방침은 대표이사 결재를 득해야 한다.

###### 2) 환경안전보건방침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게시

- (1) HSE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자료를 확인한다.
- (2) 게시자료는 사내게시판, 구내식당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임직원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4) HSE팀은 법규사항 파악 후 수시로 게시물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환경안전보건 현수막 게시

- (1) HSE팀은 환경안전보건의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분기1회 게시하여야 한다.
- (2)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임직원에게 교육을 해야된다.
- (3) 현수막의 비치장소는 각 공장별 최적의 위치 지점에 설치를 해야된다.

4) 안전캠페인활동

- (1) HSE팀은 환경안전보건의 의식고취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2) 안전캠페인에 대한 물품에 대한 사항은 협의하여 진행을 한다.
- (3) 분기별로 진행된 안전캠페인 경영진보고 해야 된다.

5) 안전면담

- (1)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청취를 하며, 이를 근로자 면담일지 양식(OH-0100-01)기록하여 개선조치토록 해야된다.
- (2) 각 팀별로 안전면담에 대한 사항은 매월 1회 보관해야 되며, 보관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선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HSE팀은 각 팀별로 취합된 내용에 대한 개선조치 현황을 분기별 1회 확인토록 하여 한다.

6) 안전보건포상 : 무재해포상, 산업재해유공포상,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위험성평가인증 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7) 안전보건징계 : 인사관리규정(KCS-0N-0400)에 의거한다.

8) 계절별 점검 : HSE팀은 아래의 [표1] 계절별 점검을 기준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표1] 계절별 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점검주기	해빙기,풍수해,동절기 시즌에 점검을 한다.	
2	점검항목	해빙기	시설물,공사,환경 등 총3가지 항목 점검을 하며, 해빙기/풍수
		동절기	전기/위험시설, 소방시설 총2가지 항목 점검을 하며, 동절기
3	점검결과	점검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된다.	

4.3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 벌채 금지

자연 서식지 손실,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 아래 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1) 사업장 전반에 설치할 경우 지역의 생물다양성의 상태와 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사업장 및 계열 회사, 관계회사, 협력사 및 하위 공급망 등에도 적용 될 수 있게 노력한다.

- (2) 생물다양성 및 토지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약(World Heritage areas, IUCN Category I-IV protected areas 등)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국가 및 지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부기관, 전문가그룹 등과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3)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종 및 고유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 국가 및 세계 생물다양성 보호 이니셔티브 지원등을 고려한다.
- (4)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고(NNL, No Net Loss),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NPI, Net Positive Impact)을 미칠 수 있도록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내부 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
- (5) 보호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직원 및 이해관계자 요청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6)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산림 파괴 리스크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국가기관, 외부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나무 심기활동 등 산림보호 활동 등을 고려한다.

#### 4.4 경영환경파악

##### 1) 조직의 상황 파악

NO	항목	세부항목
1	주기	HSE팀은 매월1회 내외부 경영이슈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외부 이슈사항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적 및 기타 환경 이슈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내부 이슈사항	조직의 가치, 문화, 지식, 성과 이슈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2) 리스크 식별

NO	항목	세부항목
1	범위결정	파악된 이슈사항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2	요구 기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결정 후 요구와 기대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3	구분	요구와 기대사항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과 기타요구사항을 구분해야 된다.

3) 리스크와 기회의 분석/평가

NO	항목	세부항목
1	범위결정	파악된 이슈사항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2	요구 기대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은 요구와 기대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3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리스크 및 기회관리규정(KCS-0A-0300)에 명기된 업무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4.5 규정관리

- 1) 매뉴얼 :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KCS-M-03)에 의거 진행한다.
- 2) 프로세스 : 환경안전보건경영 프로세스(KCS-S0J-0000) 에 의거 진행한다.
- 3) 규정관리 : HSE팀은 아래의 [표2] 규정사항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표2] 규정사항

NO	항목	세부항목
1	작성내용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사항,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작성주기	정기적으로 매년1회 작성해야 된다.
3	특이사항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4	기준사항	작성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5	절차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의무사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 4) 지침관리 : 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KCS-0H-0100)에 의거 지침을 작성해야 된다.
- 5) 문서관리 : 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KCS-0H-0100) 관련양식을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환경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양식을 작성해야 된다.
- 6) 소방계획서/가스안전관리규정/전기안전관리규정/승강기안전관리규정 :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해야된다.

4.6 조직구성

- 1) 전사조직도 : 인사지원팀에서 관리를 한다. 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KCS-0N-0100)에 의거한다.
- 2) 공장별 환경안전보건조직도관리

NO	항목	세부항목
1	문서관리	HSE팀은 공장별 환경안전보건조직도(0H-0100-04)을 관리해야 된다.
2	해당범위	법정선임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사항 결정	세부적인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의 경우는 교육훈련규정(KCS-0M-0100)에 명기된 업무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4.7 목표수립

NO	항목	세부항목
1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안전보건방침과의 일치해야 된다.</li> <li>2) 측정가능 및 성과능력평가가 되어야 한다</li> <li>3)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li> <li>4)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li> <li>5) 적용되는 경우 업데이트 해야된다.</li> <li>6) 목표 및 목표달성계획서를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한다.</li> </ol>
2	고려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용되는 요구사항 : 법적인 요구사항</li> <li>2)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에 대한 결과사항 : 경영환경분석, 환경영향평가, 위험성평가</li> <li>3)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 노사협의회,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협의체</li> </ol>
3	결정 필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엇이 수행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li> <li>2) 인적자원, 물적자원등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된다.</li> <li>3)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li> <li>4) 언제 완료할것인지 여부</li> <li>5)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포함하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li> <li>6)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조직의 경영프로세스를 통합할 것인지</li> </ol>
4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팀에서 전사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경영진 방침이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 HSE팀에서는 환경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li> <li>2) 목표수립시에는 목표관리표 양식(0H-0100-05)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된다.</li> <li>3) 목표관리시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과제, 연간목표, 상태적목표, 평가배점, 세부추진계획, 전략과제/교유과제, 설정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li> </ol>

5	모니 터링	1) 목표관리표 기준 내용을 반기1회 준수여부를 보고해야 된다.
---	----------	-------------------------------------

**4.8 예산관리 : 예산관리지침(KCS-0A-0201)에 따른다.**

**4.9 법정선임인원관리**

1) 역량 및 적격성 부여 : 교육훈련규정(KCS-0M-0100)에 의거한다.

2) 선임업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각 공장 별 대표이사로서 선임한다. 2) 대표이사가 부재일 경우 공장별 생산팀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선임방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3	서류보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6)를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각 공장 별 공장장으로 선임한다. 2) 공장장이 부재일 경우 공장별 생산팀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선임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7)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3	서류보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7)를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3) 관리감독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각 공장별 생산팀장 및 팀원, 현장관리자 직장장, 직장, 반장이 선임이 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관리감독자 선임에서 제외한다.
2	선임방법	관리감독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8)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3	서류보관	관리감독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8)을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보유자에 한하여 선임해야 된다. 2) 보건관리자는 산업위생관리기사,간호사,의사자격보유자에 한하여 선임해야 된다.
2	선임방법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9)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0)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3) 자격 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련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류보관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09) 전자 또는 서명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0)전자 또는 서명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를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2)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이수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선임방법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1)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

		야 된다.
3	서류보관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1)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2)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인원
2	선임방법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2)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된다.
3	서류보관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2)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7)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인원 2) 가스기능사 보유인원
2	선임방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3)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관할지역 관청 해당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류보관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3)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	-----------------------

(8)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가스기능사 이상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 자격보유자 인원을 기준
2	선임방법	1)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4)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관할지역 관청 해당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류보관	1)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4)는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9)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 자격보유자 인원 중 경력 2년 이상 인원 기준으로 선임해야 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능장 자격보유자 인원 중 경력 2년 이상 인원 기준으로 선임해야 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보유자 인원 중 경력 4년 이상 인원 기준으로 선임해야 된다.
2	선임방법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5)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류보관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5)는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10)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승강기기사, 산업기사 2) 승강기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2	선임방법	1)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6)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원 24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서류보관	1)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6)을 전자 또는 서면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한다.

(1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기계설비법에 의거한 자격요건 이상이 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된다.
2	선임방법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7)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법정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기계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기계기술인 협회에 신고시에는 일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된 비용은 해당 이슈 발생시 정산한다. 4) 경력신고서 접수후에는 해당관할 지역 관청 건설과에 경력신고서를 신고해야 된다.
3	서류보관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7)을 전자 또는 서명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기계설비법에 의거한다.

(12) 지게차 운전원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1) 지게차 운전원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지게차인 경우는 지게차운전기능사 보유인원이 운전을 해야된다. 2) 지게차 운전원은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지게차인 경우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보유지원이 운전을 해야된다.
2	선임방법	1) 자격보유인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자격증 등을 확인해야 된다. 2) 지게차 운전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8)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3	서류보관	지게차 운전원 자격증(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유해위험취업에 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한다.

(13) 환경기술인 및 폐기물 기술관리인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자격요건 이상이 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임명해야 된다.
2	선임방법	1) 환경기술인 및 폐기물기술관리인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9)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임명된 인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선임이 된다.
3	서류보관	1) 환경기술인 및 폐기물기술관리인 선임보고서 양식(0H-0100-19)을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다.

(14) 방사선안전관리자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한 자격요건 이상이 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된다.
2	선임방법	1) 방사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20)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선임인원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한 기본교육 이수 후 원자력 안전재단에 선임신고를 해야 된다
3	서류보관	1) 방사능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20)는 전자 또는 서면

		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2) 법정선임신고서류도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다.

(15) 환경안전보건담당자 지정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경력1년 이상인원의 각 팀별 인원에 대하여 환경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해야 된다.
2	선임방법	1) 환경안전보건담당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21)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2) 지정된 인원에 대한 환경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이수를 해야한다.
3	서류보관	1) 환경안전보건담당자 선임보고서 양식(0H-0100-21)을 전자 또는 서면방식으로 보관해야 된다.
4	기타사항	기타사항 환경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거한다.

(16) 영영사

NO	항목	세부항목
1	선임인원	집단급식영업소 관리시에는 위탁업체를 대상 업체가 영영사를 선임해야 된다.
2	선임방법	선임된 영영사 신고증, 자격증을 HSE팀에서는 위탁업체 요하여 자료를 접수받아야 된다.
3	서류보관	요청한 영영사 관련 문서는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영영사관리법에 의거한다

4.10 교육관리

1) 운영

NO	항목	세부항목
1	내용	환경안전보건관계법령 교육내용 기준
2	강사조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전문기관인원포함),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 인원 포함), 사외전문가 등이 교육실시가 가능하다.
3	방법	사내강사활용교육, 외부위탁교육
4	서류보관	교육 및 서명일지(0H-0100-22)를 작성 후 5년간 보관

5	기타사항	교육훈련규정(KCS-0M-0100), 사내강사운영지침(KCS-0M-0101)에 따른다.
---	------	--

2) 법정선임자 교육

NO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주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공장장	2년
2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2년
3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관리자 선임인원	2년
4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선임인원	1년
5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원	2년
6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2년
7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인원	3년
8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교육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인원	3년
9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인원	3년
10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인원	3년
1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3년
12	지게차 운전자	건설기계 건설면허증 교육인원	10년
13	환경기술인 및 폐기물기술인 교육	환경기술인 임명된 자	3년
14	방사능안전관리자 교육	방사능 안전관리자 교육	3년
15	식품위생관리자 교육	영영사 인원 교육	1년
16	집단급식영업소 관리자교육	집단급식영업소 운영자	1년
17	환경안전보건담당자 교육	환경안전보건 담당인원	1년
18	에너지관리자 교육	에너지 관리 담당인원	3년

3) 근로자 교육

NO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주기
1	신규채용교육	신규입사자	수시
2	특별안전보건교육	신규입사자 중 유해위험작업자	수시
3	정기안전보건교육	전 임직원	매월
4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인원	수시
5	성희롱 예방교육	전 임직원	1년
6	장애인식 개선교육	전 임직원	1년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 임직원	1년

8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교육	지입차주,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등	수시
9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업무 취급자	1년

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NO	교육내용	샤시 공장	구동공장 (성서)	구동공장 (현풍)	전동화 공장
1	프레스	해당없음	해당	해당	해당없음
2	하역운반기계기구	해당	해당	해당	해당
3	크레인 및 호이스트	해당	해당	해당	해당
4	정전 및 활선작업	해당	해당	해당	해당
5	압력용기	해당	해당	해당	해당
6	방사선관계업무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해당
7	허가 및 관리대상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8	로봇작업	해당	해당	해당	해당

4.11 회의체 운영

1) 회의체 운영

(1) 이사회보고

NO	항목	세부항목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2	대상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
3	회의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금년도 활동 계획
4	회의주기	년1회
5	회의참석 대상자	사내이사, 사외이사
6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0H-0100-23)을 작성해야 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NO	항목	세부항목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2	대상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3	회의내용	1) 법규파악	11) 유해위험관리
		2) 경영방침 및 문화조성	12) 업체관리
		3) 경영환경파악	13) 내외부시정명령관리
		4) 매뉴얼	14) 사고관리
		5) 조직구성	15) 업무점검 등
		6) 목표수립	전반적인 환경안전보건 업무사항에 대한 논의
		7) 예산관리	
		8) 법정선임인원관리	
		9) 교육관리	
		10) 회의관리	
4	회의주기	분기	
4	회의참석 대상자	1) 사측 : 공장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원 2) 노측 : 노조대표, 공장별 대표관리자, 차석 관리자 등 3)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세부적인 사항은 단체협약규정(KCS-0Q-1200)을 따른다. 5) 미참석자 인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원을 참석토록 한다.	
5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0H-0100-24)을 작성해야 된다.	

(3)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NO	항목	세부항목	
1	법적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을 따른다.	
2	대상기준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	
3	회의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등,	5) 건강진단
		2) 규정 및 수칙의 제정 및 교육,	6) 조사,
		3) 방역,	7) 재해발생시 대책, 이의제 기,

		4) 병원, 건강관리실 운영	8) 교육, 무재해 포상
4	회의주기	년1회	
5	회의참석 대상자	노사대표자등	

(4) 노사협의회

NO	항목	세부항목
1	법적근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노사협의회(KCS-0Q-0100)규정을 따른다.
2	대상기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
3	회의내용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회의주기	분기별 1회 실시
5	회의참석 대상자	노사동수 인원으로 구성된 자

(5) 도급협의체

NO	항목	세부항목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2	대상기준	수급업체를 보유한 사업장기준
3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2)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 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 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	회의주기	월1회
5	회의참석 대상자	도급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수급인(도급업체 대표, 도급업체 관리감독자)
6	회의록	도급협의체 회의록(0H-0100-26)을 작성해야 된다.

4.1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상황점검

1) 유해위험방지조치 : 관련문서는 해당업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보존한다.

(1) 환경영향평가 :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규정(KCS-0H-0300)을 따른다. 업무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NO	항목	세부항목
1	작업공정의 분석 및 자료 수집	활동의 분석 및 자료 수집

2	공정별 환경측면 파악	일반사항파악, 환경측면 파악 및 목록 작성
3	심각한 환경영향 평가	단순평가, 종합평가
4	심각한 환경영향 등록 및 개선	개선대책 수립 후 교육등

(2) 위험성평가 : 세부적인 사항은 위험성평가규정(KCS-0H-0200)에 따른다. 업무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NO	항목	세부항목
1	안전보건위험 정보파악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정보파악
2	위험성평가표작성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 관련 파악
3	중요위험성 등록부 및 개선대책수립	8점 이상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필요
4	개선대책보고서 작성	개선대책 전후보고서 작성한다.

(3) 작업계획서

NO	항목	세부항목
1	작성의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실시
2	해당작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2) 전기작업 3) 중량물 취급작업 등
3	작성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 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4	작성사항	<전기작업> 1)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2)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인원 3)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섬광, 아크 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



		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등 작업시작 전 필요한 사항
5	작성사항	<중량물의 취급작업>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6	작성사항	사용부서에서는 지게차/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양식(OH-0100-27)을 활용하여 작성을 한다.

(4) 환경안전보건표지 관리

NO	항목	세부항목
1	결정사항	환경안전보건표지 위험성평가 결과 및 법정 유해위험기계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착위치 및 내용 등이 결정된다.
2	부착사항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 식별은 환경안전보건표지 및 수칙 등록부(OH-0100-28)를 기준으로 해당장소에 표지 및 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주관사항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의 구입과 지급은 HSE 팀이 주관하여야 한다.
4	변경사항	해당팀은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HSE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준수사항	근로자는 명기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실시한다.

NO	항목	세부항목
1	사업종류 결정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사업의 종류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2	기계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로는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설비 결정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등이 있다.
3	대상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제품생산공정의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를 변경시
4	서류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기계설비를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등의 작업방법 개요 등
5	제출일자	준공 15일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판정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이 있으며, 적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처리된것이며, 조건부 적정의 경우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부적정의 경우에는 공장 조업중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6) 작업중지

NO	항목	세부항목
1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인허가

NO	항목	세부항목
1	환경분야	1) 폐수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 증명서, 폐기물 신고증명서 등이 있

		다. 2)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을 한다. 3) HSE팀은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2	안전보건 분야	1) 소방완성검사증명서, 위험물완성검사증명서, 가스완성검사증명서,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 방사능기기신고증 등이있다. 2)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을 한다. 3) 관련부서는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2) 환경점검 : 관련문서는 해당업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보존한다.

(1) 수질검사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환경기술인은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4	절차	수도법에 의거한 저수조 청소 시 사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3	결과	적합/부적합등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수질검사 결과성적서는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수조 청소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보건관리자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검사항목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4	절차	수도법에 의거 반기 1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야 된다.
3	결과	적합/부적합등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저수조 청소 결과서는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대기자가측정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법정기준으로 실시해야 된다.
2	검사항목	대기배출시설 종별로 다르며, 통상적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점검을 한다.
3	절차	자체자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측정기준초과시에는 공학적인 개선조치를 해야된다.

4	결과	측정물질별 법적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대기측정기록부는 반기1회 점검 후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4) 폐기물 성분검사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환경기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내 폐기물 발생 시에는 공인된 폐기물 처리기관에 폐기물 채취를 의뢰해야 된다.
2	검사항목	폐기물 분석은 법정 기준의거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절차	<p>의뢰받은 폐기물 분석 기관은 사업장에서 직업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p> <p>분석이 완료된 시료를 통해 폐기물 처리방안을 결정을 한다</p> <p>결정된 폐기물 처리방안이 일반폐기물로 발생이 되는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가능업체를 선정 후 폐기물을 처리하며 신고기준 용량이 발생 시에는 대구경북자유구역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결정된 폐기물 처리방안이 지정폐기물로 발생이 되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가능업체를 선정 후 폐기물을 처리하며, 신고기준 용량이 발생 시에는 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4	결과	성분검사 결과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5	문서보관	폐기물 분석 결과성적서는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5) 폐기물 배출신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p>1)일반/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자</p> <p>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p> <p>3)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자</p> <p>4)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p>
2	검사항목	지정폐기물은 배출시 폐유,폐흡착제,폐필터 등 검사하여야 한다.
3	절차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처리업체 계약서, 공제증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허가증을 가지고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결과	사업자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 환경안전보건P

표준번호 KCS-OH-0100

## 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일자(No) 2024.07.18(15)

5	문서보관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각 사업장에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	------	---------------------------------

(6) 폐기물 올바로신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일반/지정 기타 폐기물을 처리할시 관련된 전자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련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2	절차	회원가입을 하여 전자 인증서를 인증 받아야 한다. 전자인계서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의 종류(성상), 차량번호, 운반자, 인계일자, 처리자, 처리장소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인계서 작성후 발생량을 입력한다.
3	결과	폐기물 인계서등 일치유무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문서보관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대장 등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7) 폐기물 처리실적보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환경기술인 매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 후 해당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달서구청, 대구경북자유구역청)
2	보고항목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배출시설, 업종, 공단, 주생산품, 종업원 수, 제품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등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보유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이 포함이 된다.
3	절차	폐기물 인계내역을 확인하여. 보관량, 폐기량, 처리자, 운반자를 확인하여 처리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올바로)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과	폐기물 처리실적 인계서, 폐기물 처리대장
5	문서보관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사업장에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8) 폐기물 처분부담금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매년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를 해야된다.
2	보고항목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있다.
3	절차	부과대상 처리방법은 소각(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열처리조합시설), 매립(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등이 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산정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청은 부담금신고, 부담금신청, 납부고지, 부담금 납부순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
4	결과	법에 의거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공인된 폐기물처리부담금 실적자료 보관해야 된다.

(9) 위탁폐수 발생량 신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위탁 폐기물을 처리할시 관련된 전자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련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2	절차	회원가입을 하여 전자 인증서를 인증 받아야 한다. 전자인계서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의 종류(성상), 차량번호, 운반자, 인계일자, 처리자, 처리장소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결과	위탁처리 인계서
4	문서보관	처리인계서는 사업장에 결과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10) 전국오염원 조사표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1)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보고항목	1)관할 1~5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2)관할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3	절차	허가나 신고 사항이 유효한 1~5종 폐수배출사업장의 현황 자료 조사 업종, 소재지, 규모, 처리형태,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폐수오염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자료 조사를 작성
4	결과	전국오염원 조사표는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

(11) 폐기물 계근대 검교정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 및 기준을 유지
2	검사	비자동저울(계근대) 검교정 시기에 따른 검교정 실시(2년마다 검교정 실시)
3	절차	1)정기검사를 대상 및 계량기 현황을 조사한다. 2)정기검사 대상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측정 대행 기관에 의뢰를 신청한다. 3)측정대행 기관에서 방문하여, 계근대 검교정 및 검사를 수행한다. 4) 개선명령, 검정증인 제거 및 승인 등에 표시증을 발부받는다
4	결과	검사 증인 표시 부착

3) 에너지점검 : 관련문서는 해당업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보존한다.

(1) ESG평가보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운영한다.
2	전략	1)환경(Environment) 친환경,기후변약,대응에너지, 재활용 등 해당된다 2)사회(Social) 사회적 책임경영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3)지배구조(Governance) 투명경영 및 법과윤리준수가 해당된다.
3	절차	기업의 ESG평가 평가분야별 카테고리 및 평가 지표(인적자본, 직업보건 및 안전, 제품품질,안전, 정보보호 및 보안, 협력업체, 지역사회, 오염방지, 수자원,에너지,자원순환,기후변화, 주주 , 이사진 및 경영진, 그룹구조,경영정보공시 등) 를 만들어 평가한다.
4	결과	ESG평가 SHEET 개선 조치 여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사용량신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에너지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자)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실적 및 설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보고항목	1)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및해당 연도 분기별 계획
3	절차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4	결과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보고항목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등이 있다.
3	절차	매년 3월까지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전문인증기관에 검증을 받은 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4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명세서 검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온실가스 이행계획서 보고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2	보고항목	온실가스 목표이행실적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보고가 해당된다.
3	절차	매년 연간 단위의 관리업체, 배출량 및 목표량, 배출시설운영계획 등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결과	이행계획서 이행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5) 환경정보공개검증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녹색기업,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 기업은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항목	기업개요, 녹색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 윤리적책임이 해당된다.
3	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한다.
4	결과	사전검토서, 현장확인계획서, 검증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 관련문서는 해당업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보존한다.

(1) 방호조치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NO	기계기구	방호조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 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 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2	기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NO	위험요인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3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4	방호조치 해제시 준수사항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NO	항목	세부항목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2) 안전인증

NO	항목	세부항목		
1	대상	기계 또는 설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2	대상	방호 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 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3	대상	보호 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	준수사항	1) 안전인증이 표시된 제품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된다. 2) KCS 마크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NO	항목	세부항목		
1	대상	기계 또는 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2	대상	방호 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등근톱 반발 예 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 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3	대상	보호 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4	준수사항	1) 안전인증이 표시된 제품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된다. 2) KCS 마크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4) 현장순찰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에 의거 점검
2	점검항목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점검
3	절차	현장 반/라인/공정을 선정 후 점검을 진행해야된다. 점검시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외부기관 입회 후 점검을 진행한다.
4	결과	점검 진행경과 유해위험요인 발굴시에는 해당부서에 개선요청을 해야 된다.
5	문서보관	순찰점검일지는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기된 해당 유해위험기계기구 기준 1회/2년 실시	
2	검사항목	방호장치 작동상태 및 안전조치 관련된 사항등	
3	절차	1) 공장별 대상설비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품목에 의거 실시한다. 2) 안전검사 주기 및 세부내역은 관련법에 의거 실시해야 된다. 3) 안전검사 신청은 관련법에 의거 실시해야 된다	
4	대상설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KN미만 제외)
		고소작업대(자동차 탑재형)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5	결과	합격/불합격으로 처리된다.	
6	문서보관	안전검사 결과성적서는 보관한다.	

(6) 안전보건진단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기된 기준으로 이슈사항 발생시 업무수행

2	진단항목	1)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이 된다. 2) 세부적으로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시스템 진단 구분된다.
3	검사항목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 유지 등 보건관리
4	절차	1) 자율진단 사업장 자체내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 및 개선내용이다. 2) 명령진단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명령하는 진단이다 3) HSE팀은 안전보건진단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업무 계획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진단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결과	안전보건보건진단 결과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6	문서보관	안전보건진단결과서를 보관해야 된다.

(7) 소방시설자체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특급, 1급, 2급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3)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 해당이 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정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	소방시설법에 명기된 법적 기준에 의거 점검한다.

3	절차	<p>1)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외부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점검 시에는 소방시설 등록업에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된다.</p> <p>2)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에는 1주일전 공장 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사유,점검기간,점검사항, 점검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p> <p>3) 개선계획에는 설비, 부적합사항, 시정방안, 개선기한, 담당자, 관련근거(NFSC)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립해야 된다.</p> <p>4) 개선계획을 근거로 개선조치를 진행하며, 개선결과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p>
4	결과	<p>1) 소방시설 자체점검 진행결과는 점검종료 후 7일이 되는 시점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p> <p>2) 신고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신고시점 7일 이내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5	문서보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자체보관해야된다.

(8) 화재예방안전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사업장(특수건물)의 경우에는 매1년 이상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화재예방안전검을 수검받아야 된다.
2	검사항목	<p>1) 리스크개요,</p> <p>2) 건물현황</p> <p>3) 화재폭발위험(화기시설, 위험물 시설, 전기시설, 공정위험),</p> <p>4) 건축방화시설(연소확대방지시설, 피난시설),</p> <p>5) 위험도평가(화재위험도지수, 일반공장 화재 MPL/EML산정, 화학공장 최대예상손해사정)</p> <p>6) 건물현황</p> <p>7) 손실예방 및 피해경감대책</p> <p>8)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p> <p>9) 보험요율의 할인등급 사정 등이 있다.</p>
3	결과	결과의 경우는 기준은 없으며, 개선권고사항을 기재한다.
4	특이사항	<p>1)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안전점검을 대응해야 된다.</p> <p>2) 화재예방안전점검 항목으로는 점검결과 내용은 전결규정에 의거</p>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문서보관	안전점검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된다.

(9) 위험물안전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등이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명기된 일정용량 이상의 옥내/옥외 위험물 저장소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검사항목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기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3	절차	1) 안전검사 결과 이상발견시에는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을 확인 후 관할소방서 위험물 안전검사에 대응하여야 한다. 3) 만약 위험물 탱크를 가동중지 등 사항이 발생 시에는 유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
4	결과	합격/불합격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위험물안전점검 결과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10) 고압가스 안전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점검, 용기등의 검사가 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명기된 일정용량 이상이 제조소/저장소의 경우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검사항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명기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3	절차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을 확인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결과 이상발견시에는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결과	합격/불합격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고압가스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11) 도시가스 안전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	----	------

1	기준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가 있다.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검사항목	도시가스사업법에 명기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3	절차	1) 도시가스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을 확인 후 한국가스 안전공사 또는 한국도시가스검사(민간)등에 안전검사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결과 이상발견시에는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결과	합격/불합격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도시가스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12) 승강기 안전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1)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으로 구분이 된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항목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명기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3	절차	1) 승강기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을 확인 후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안전검사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결과 이상발견시에는 전결규정에 의거 보고해야 된다.
4	결과	합격/조건부합격/불합격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5	문서보관	승강기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13) 시험실 안전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1년/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	점검항목은 화공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가스안전등이 있다.
3	절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4	결과	적합/부적합 사항으로 결정된다.

5	문서보관	시험실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	------	----------------------------

(14) 기계설비성능점검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제 11조(성능점검)에 따라 성능점검 진행이 필요함.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1회 이상 실시.
2	검사항목	기계설비법에 명기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3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서 실시.
4	결과	적합/부적합 사항으로 결정된다.
5	문서보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HSE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지자체 요청시 제출해야함.)

(15) 중장비 안전검사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라 정기 검사가 필요함. 2) 지게차 및 토모터의 경우 20년이하로서 2년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함.신규등록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 한다. 3) 부적합일 경우 벌금 대상이기 때문에 정비 후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사항목	건설기계관리법에 명기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3	절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명기된 점검절차에 따른 실시
4	결과	적합/부적합 사항으로 결정된다.
5	문서보관	중장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 된다.

5) 보건관리 : 관련문서는 해당업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문서보존기한에 따라 보존한다.

(1) 보호구 인증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업무를 진행한다.	
2	대상	안전인증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방독마스크
		안전화	송기마스크
		안전장갑	전동식 호흡보호구
		방진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4	점검	보건관리자는 보호구 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을 확인해야 되며, 미인증된 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다.	

(2) 보호구 지급대상 작성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업무를 진행한다.
2	점검	매월 1회 보호구 지급대장(0H-0100-29) 관리해야 되며, 보건관리자는 매월 1회 지급대장 요청해야 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NO	항목	세부항목
1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방법>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

		<p>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p> <p>3)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p> <p>4)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p>
2	<p>물질 안전보건 자료 작업공정 별 요령계 시</p>	<p>&lt;포함내용&gt;</p> <p>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p> <p>1) 제품명</p> <p>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p> <p>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p> <p>4) 적절한 보호구</p> <p>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이 있다.</p> <p>&lt;주의사항&gt;</p> <p>1)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p> <p>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해야 된다.</p>
3	<p>물질안전 보건자료 경고표지 부착</p>	<p>&lt;기준&gt;</p> <p>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p> <p>&lt;포함내용&gt;</p> <p>1) 명칭 : 제품명</p> <p>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p> <p>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p> <p>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p> <p>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p>

(4) 현장순찰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에 의거 점검
2	점검항목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점검
3	절차	현장 반/라인/공정을 선정 후 점검을 진행해야된다. 점검시에는 보건관리자, 외부기관 입회 후 점검을 진행한다.
4	결과	점검 진행경과 유해위험요인 발굴시에는 해당부서에 개선요청을 해야 된다.
5	문서보관	순찰점검일지는 문서화된 정보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작업환경측정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정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6개월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인 준수사항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정 위탁	1)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4	근로자 대표참여	근로자 대표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	측정방법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한다. 4)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5)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6	보고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2)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p>
7	개선조치	<p>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p> <p>2)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8	설명회 실시	<p>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p> <p>2)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p>

(6) 청력보존프로그램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p>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90dB(A) 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p>	
2	포함내용	운영체계구축	<p>보건관리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p>
		소음측정 및 노출평가관리	<p>1) 80데시벨 이상 연속음과 120데시벨 이상의 총격음 6개월에 1회 이상 혹은 수시평가</p> <p>2) 설비 및 작업환경 변경 시 수시평가</p> <p>3) 소음작업도 위치도 작성</p> <p>4) 대상근로자의 소속,연령,성별,근속연수,건강상태(청력손실도) 파악</p>
		근로자 관리	<p>1) 배치 전 혹은 매년 1회 정기청력검사 실시</p> <p>2)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착용상태 점검</p>

		공학적 대책	1) 노출기준 초과 대상 공정 시설 대체 혹은 차음 조치 2) 불가능한 경우 근무시간 단축 혹은 순환근무
		문서 및 기록관리	1)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계획서 2) 소음 노출평가 결과 3) 보호구 지급관리, 착용 실태 4) 평가 및 결과에 따른 대책 5) 소음 노출평가는 최소5년 이상,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시까지 보존

(7) 방역조치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보건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독하여야 한다.
2	조치 대상항목	1) 콜레라, 장티푸,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2) A형 간염
3	준수사항	1) 방역업체는 소독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방역업체는 소독실시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자는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된다

(8) 건강진단에 의무사항

NO	항목	세부항목
1	결과 공유	1)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대표 요구 시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야 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요구 시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해야 된다.
2	의무 사항 (사업주)	1)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 개선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무 사항 (근로자)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NO	항목	세부항목	
1	대상	보건관리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걸린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감염병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질환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호흡기병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준수사항	1)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는 건강 회복 시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등

NO	항목	세부항목
----	----	------

1	기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서는 안된다.
2	해당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갱내에서 하는 작업</li> <li>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li>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li>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li> <li>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li>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li>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li> <li>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li> <li>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ul>
3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li> <li>2)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된다.</li> </ul>

(11) 일반건강진단

NO	항목	세부항목		
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2) 다만, 법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li> </ul>		
2	검진기관	공인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진주기	사무직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의 사무업무 종사자	1회/2년
		비사무직	사무직 외 종사자	1회/1년
4	검진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거병력/직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li> <li>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li> <li>3)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li> </ul>		

		4) AST/ALT, GTP 및 총콜레스테롤등
--	--	---------------------------

(12) 특수건강진단

NO	항목	세부항목
1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외대상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3	배치전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2) 유해인자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와 동일하다.
4	수시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5	임시	<대상> 1)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항목> 1)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과 항목은 동일 2)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검진항목이 정해진다.

(13) 임원건강검진 : 회사 임원 대상으로 1회/1년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 검진기준, 검진항목은 검진기관의 항목별로 결정을 할 수 있다.

(14) 추가건강검진 : 단체협약규정(KCS-0Q-1200)에 따른다.

(15) 보건증

NO	항목	세부항목
1	대상자	구내식당 근무중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1)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4	실기시관	건강진단은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한다.
5	접수시점	보건관리자는 구내식당에서 실시한 보건증을 년1회 구내식당 위탁업체 담당자로부터 접수받아야 한다.

(16)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 매년 실시하는 대외관청(예시 : 달서구 보건소, 달성군 보고서)등의 증진프로그램을 확인하여야 이행하여야 한다.

(17) 유소견자 관리 :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등에서 발생하는 유소견자를 관리해야 된다.

(18) 의약품구매 : 매월 보건관리자는 의약품을 구매해야 된다.

(19) 근골격계 질환 관리

NO	항목	세부항목
1	유해성 주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을 게시해야 된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중량물의 표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3	유해요인 조사	<p>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유해요인조사표를 작성해야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li> <li>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li> <li>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유무</li> </ol>
4	작업환경 개선	<p>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p>

(20)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NO	항목	세부항목
1	수립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li> <li>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li> <li>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li> <li>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li> <li>5)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li> </ol>
2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li> <li>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작업자 정보</li> <li>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li> <li>4)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 유입, 발생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li> <li>5) 작업시 착용해야되는 보호구</li> <li>6) 비상연락체계 등</li> </ol>
3	기타	<p>기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p>



경창산업

환경안전보건P

표준번호

KCS-0H-0100

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일자(No)

2024.07.18(15)

**업체관리**

1) 업무사항

-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2) 도급의 승인
- (3) 도급승인 시 하도급의 금지
- (4)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 (5)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6)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확인, 경보체계운영과 대피, 위생시설의 설치 및 제공등이 있다.
- (7)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8)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2) 기타사항 :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환경안전보건 사내도급업체 관리규정(KCS-0H-0600)에 의거한다.

**4.13 내외부시정명령관리**

1) 내부심사 : 경영시스템에 의거한 내부심사

NO	항목	세부항목
1	심사기준	1) 이전 내부심사결과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빈도, 방법, 책임, 협의, 계획중인 요구사항과 보고를 포함한 내부 심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행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각 심사에 대한 범위와 심사기준을 규정
2	심사원구성	심사프로세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원을 선정
3	이해관계자 공유	1) 내부심사결과가 관련된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2)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대표와 관련 이해관계자에 보고됨을 보장해야 된다.
4	조치사항	1) 부적합을 다루기 위한 그리고 환경안전보건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 2) 심사프로그램과 심사결과에 대한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 공유
5	기타사항	내부심사 규정(KCPS-0T-0100)에 의거 한다.

2) 3자 심사 : 경영시스템에 의거한 3자 심사

NO	항목	세부항목
----	----	------

1	심사기준	인증심사기관에 경영시스템 갱신, 연장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주요항목	조직의 상황이해, 리더십, 기획, 지원, 실행, 평가, 개선등의 업무가 있다.
3	고려사항	인증심사기관 선정전에는 M/D, 심사범위, 갱신여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는 전산정보시스템 및 기타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3) 환경행정감독

(1) 점검항목

NO	점검사항	세부내용
1	폐기물 배출자 신고등에 관한 사항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여부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배출자 신고서 또는 처리계획의 확인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여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등(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 때 입력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3	폐기물 위탁 적법처리여부	위탁업체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등의 정확도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여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의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 여부등
4	소각시설등	처리기준 설치기준 준수여부
		처리기준 관리기준 준수여부(필요시 소각재, 바닥재 등 시료 채취)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의 적합여부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매립표지판의 설치여부
	옹벽, 제방등 구조물의 적정여부등

4) 산업안전보건감독

(1)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명령,제출

NO	항목	세부항목
1	수립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시행명령	1)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출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2) 포함내용으로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4	검토	1)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2)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은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명할 수 있다.
5	준수사항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등

NO	항목	세부항목
1	게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 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2	해체요청	사용중지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업무분담	작업중지 해체를 위해서는 각팀별로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5) 소방특별조사

NO	항목	세부항목
1	실시기준	1)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사유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4.14 재해발생시 조치

1) 산업재해 관리

(1)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NO	항목	세부항목
1	발생사실 인지 시	1)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2)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발생사실 외부기관보고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된다. 2)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등 이 포함이 된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NO	항목	세부항목
1	은폐금지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그 발생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2	산업재해 제출기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해야 된다
3	산업재해 조사표 포함 내용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원인 및 장소, 재해 재발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업재해 조사표 확인 절차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자에게 확인받아도 된다.
5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 해당병원에서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기타 사항을 적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하면 된다.
6	기타사항등	기타 관련하여 안전보건사고 처리규정(KCS-0H-0800)을 준수한다.

2) 보험관리

(1) 환경책임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1	가입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금액, 보장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장계약금액	사업장 단위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별표4의 기준 30억원 ~300억원으로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보장범위	보장범위는 피해보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산업재해배상책임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1	가입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가입원칙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3	해지원칙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계약 해지시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업의 폐업, 종료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가입일자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3) 화재배상책임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1	가입대상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특수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2	가입특례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가입일자	1) 30일 이내 특약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2)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

		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3) 소유권이 변경 : 그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갱신의무	특수건물 소유자는 매년 특약부 화재보험을 갱신해야 된다
5	보상금액	1)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 마다 5천만원 이상 금액 3)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 마다 보험금액 범위 내 금액 4) 재물에 대한 손해발생 시 :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 금액 5)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액 청구가 가능하다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1	가입대상	1)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사용하는 고압가스/액화가스/도시가스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이송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에게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2	가입특례	없음
3	가입일자	가스법에 의거 가입일자가 결정된다.
4	갱신의무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매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3	보상금액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별표17의 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	----	------

1	가입대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입특례	없음
3	가입일자	1) 가입시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2) 책임보험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 정보망에 가입사실을 입력해야 된다
4	갱신의무	관리주체는 매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5	보상금액	1) 사망 :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 : 1인당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피해 : 사고당 천만원 금액으로 한다

(6) 자동차 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1	적용기준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률 기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2	보상금액	사망 :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 :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운행금지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의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에 계약의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

	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7) 음식물사고배상책임보험

NO	항목	세부항목
1	적용기준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공유주방운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2	적용기준	책임보험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4	적용기준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된다.(영업등록을 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5	보상한도액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 1인당 3천만원
		부상 :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의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
6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사항을 따른다.

3) 비상사태 체계구축

(1) 비상사태 식별 : 공장별 위험성평가표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기준으로 비상사태 발생가능성을 파악을 한다.

(2)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등

NO	내용	세부내용
1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절차	위험요인 발견 및 신고, 위험요인 확인, 작업중지 및 작업자 대피지시, 위험요인 제거 실시, 위험요인 제거 확인 등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각 팀별 역할 부여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안전보건실장, 안전보건팀장, 생산팀장, 생산기술팀장, 노무담당자, 현장총괄등의 역할을 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비상연락망 확인	각 공장별 해당 팀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명기를 하

		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누락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행동요령 숙지	각 행동요령별 숙지하여 업무진행토록 한다

(3) 비상사태 시나리오 작성 :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자료를 기준으로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

(4) 비상사태 훈련 및 교육 : 비상사태 시나리오 대로 비상사태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대산업재해 대응규정(KCS-0H-0100)에 의거한다.

#### 4.15 최종점검

##### 1) 법규등록 및 준수평가

(1) 환경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의거 반기1회 환경안전보건 법규등록 및 준수평가규정(KCS-0H-0400)에 의거한다.

(2)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안전보건 법규등록 및 준수평가규정(KCS-0H-0400)에 의거한다.

##### 2) 경영검토

(3)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의거 반기 1회 경영검토를 실시해야된다.

(4) 세부적인 경영검토 입력사항, 출력사항등 경영검토 규정(KCS-0A-0400)에 의거한다.

#### 5. 법적,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

NO	요구사항	비고
1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4	소방시설법	

#### 6. 기록 및 양식

NO	기록 및 양식	양식번호	보존년한	비고
1	근로자 면담일지 양식	0H-0100-01	5년	
2	해빙기, 풍수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0H-0100-02	5년	



3	동절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0H-0100-03	5년	
4	공장별 환경안전보건조직도	0H-0100-04	5년	
5	목표관리표	0H-0100-05	5년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서	0H-0100-06	5년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0H-0100-07	5년	
8	관리감독자 선임보고서	0H-0100-08	5년	
9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09	5년	
10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0	5년	
1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1	5년	
1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2	5년	
13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3	5년	
14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4	5년	
1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5	5년	
16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6	5년	
1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17	5년	
17	지게차 운전원 선임보고서	0H-0100-18	5년	
18	환경기술인 및 폐기물기술관리인 선임보고서	0H-0100-19	5년	
19	방사능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0H-0100-20	5년	
20	환경안전보건담당자 선임보고서	0H-0100-21	5년	
21	교육 및 서명일지	0H-0100-22	5년	
23	이사회 회의록	0H-0100-23	5년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0H-0100-24	5년	

25	노사협의회 회의록	0H-0100-25	5년	
26	도급협업체 회의록	0H-0100-26	5년	
27	지게차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0H-0100-27	5년	
28	환경안전보건표지 및 수칙 등록부	0H-0100-28	5년	
29	보호구 지급대장	0H-0100-29	5년	

### 7. 개정이력

NO	일자	개정내용
1	2003.07.01	규정 신규 제정
2	2004.08.09	ISO/TS 1649 관련 절차 신규 제정
3	2009.10.15	안전보건관리절차 개정
4	2010.07.01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5	2011.05.31	안전보건관리절차 개정(관련팀 합의 추가)
6	2011.06.13	TM 사업부 관련 절차 개정
7	2013.01.01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8	2013.09.01	OHSAS 18001 도입에 따른 개정
9	2015.11.30	샤시 표준화에 따른 개정
10	2017.03.0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추가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11	2017.02.08	안전보건업무 관련 서식 표준화 관리감독자 점검일지 표준화 및 개선방안 도입 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명확화 비상사태 내용 정립(화재, 전기, 안전사고, 공조냉동, 도시가스 등)
12	2018.05.01	시스템 요구사항 변경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13	2021.04.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및 점검 및 조직변경에 따른내용변경
14	2023.06.01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통합내용 반영 및 업무효율화 구성



경창산업

## 환경안전보건P

표준번호

KCS-0H-0100

## 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일자(No)

2024.07.18(15)

15	2024.07.18	ESG 요구사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내용 반영
----	------------	--------------------------